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55

발의연월일: 2021. 4. 8.

발 의 자:조승래·최종윤·맹성규

김홍걸 · 박완주 · 진선미

홍정민 · 고영인 · 최인호

황운하 • 이해식 • 안규백

양정숙 · 한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전략이 부재하여 각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 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⑤	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
	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⑥</u> ·⑦ (생 략)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